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1 선고 2023가단520247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지배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4. 3. 28.

판 결 선 고 2024. 4. 11.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16. 체결한 증여계약을 12,118,56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118,56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17. 11. 24.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2019. 3. 29. 소외 회사로부터 D에 대한 대출금 채권 중 43,005,323원(원금 42,701,790원)을 양수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같은 해 11. 29. D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20. 7. 31. D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차전349596), 위 법원은 ‘D는 원고에게 50,234,382원 및 그 중 42,701,790원에 대하여 2020.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20. 9. 22.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D의 아들로 2018. 11. 1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11. 20.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F조합 명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D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2019.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12,900,000원) 외에 전남 장흥군 G 소재 임야가 있었는데, D는 위 임야에 대하여도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날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소극재산으로는 소외 회사에 대한 132,826,000원의 대출금 채무와 H조합에 대한 4,593,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I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2021. 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J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양수한 소외 회사의 D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전 발생한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추정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D가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과 G 부동산을 모두 피고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D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D와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D의 동생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D에게 전액 송금하여 이득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J를 상대로 사해행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증여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증여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증명책임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4843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는 D의 아들이고, 이 사건 부동산과 G 부동산은 D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유일한 재산을 무상으로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그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가 되었으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후 이를 D에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가 전득자에게 사해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처분한 경우 채권자로서는 전득자에 대하여 원물반환을 구하거나 수익자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가지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고 수익자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등 참조). 근저당권 말소 등으로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피고의 이익액 중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고,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3. 1. 1.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5,900,000원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에 가까운 2019. 1. 1. 기준 시가는 12,900,000원인 사실,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말소 당시인 2018. 11. 20. 기준 3,781,431원인 사실, 2024. 2. 6. 기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47,740,94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12,118,569원(= 15,900,000원 - 3,781,431원)이 되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47,740,945원), 피고의 이익액(12,900,000원)보다 적은 금액인 공동담보가액 12,118,56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에게 그 가액배상을 명하기로 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12,118,56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2,118,56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하영

별지